

제74차 정기 이사회 결과 보고

1 이사회 개최 개요

- 일 시: 2025. 2. 25.(화) 16:00
- 참여인원: 총16명 중 15명 참석(이사 13명, 감사 2명)
 - ▶ 참석(이사): 이성운, 박종홍, 고운기, 김영구, 김영애, 김영배, 민화식, 신영철, 장성희, 차현주, 조성제, 한규석, 한태섭
 - ▶ 참석(감사): 송태승, 두현은
- 회의진행
 - ▶ 사회자 (재)안산문화재단 경영기획부장
 - ▶ 회의주재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 심의안건 제안설명 (재)안산문화재단 경영기획부장
 - ▶ 안건심의 및 의결 참석이사 전원
 - ▶ 폐회 참석이사 전원

2 이사회 개최 내용

- 심의안건: 6건
 - 의안제2025-1호: 2024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 의안제2025-2호: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 의안제2025-3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의안제2025-4호: 대관규정 일부개정(안)
 - 의안제2025-5호: 2024년 제1회 자체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 의안제2025-6호: 임기만료 도래 비상임 임원 연임 및 충원 계획
- 보고안건: 4건
 - 제73차 이사회 개최결과
 - 제88차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 제89차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 2025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및 전년도 안전보건관리 이행실적

3 안건 심의 결과

○ 의안제2025-1호: 2024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 원안가결

- ▶ 관련근거: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 ▶ 2024 회계연도 예산편성 내역 (단위: 원)

| 예산액 | 재 원 별 | | |
|----------------|---------------|-------------|---------------------|
| | 안산시 출연금 | 전년도 이월금 | 자체수입 (대행,보조금 포함) |
| 14,569,646,000 | 9,621,014,000 | 777,267,000 | 4,171,365,000 |

- ▶ 2024 회계연도 결산내역 (단위: 원)

| 예산액 ㉑ | 수입 | | 지출 | | 잉여금 ㉒=㉓-㉔ |
|----------------|----------------|------------|----------------|---------------------|--------------|
| | 결산액㉓ | ㉓/㉑ | 결산액㉔ | ㉔/㉑ | |
| 14,569,646,000 | 14,460,595,106 | 99.3% | 13,754,252,856 | 94.4% | 706,342,250 |
| 결산상잉여금 ㉒ | 기부금수익 ㉓ | 대행사업잔액 ㉔ | 보조금잔액 ㉕ | 순세계잉여금 ㉖=㉒-㉓-㉔-㉕ | |
| 706,342,250 | 9,806,346 | 11,423,155 | 53,786 | 685,058,963 | |

- 2024년 회계연도 폐쇄기(2024. 12. 31.)까지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
- 잉여금은 자체 추경을 통해 편성 (단위: 원)

| 2024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㉖ | 2024회계연도 출연금 잔액 ㉓ | 잉여금 (자체추경예정) ㉗=㉖-㉓ |
|-----------------------|----------------------|-----------------------|
| 685,058,963 | 413,184,783 | 271,874,180 |

○ 의안제2025-2호: 회계규정 일부개정 → 원안가결

- ▶ 개정근거: 2022년 (재)안산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안산시 감사관-15436) 상위법령 반영하여 개정 필요
- ▶ 주요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47조 (계약) | 제47조(계약) ①물품의 조달이나 재산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은 일반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중 재단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체결한다. ③거래하는 금액이 적거나 업무의 성격상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제47조(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 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의안제2025-3호: 보수규정 일부개정 → 원안가결

- ▶ 개정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규정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184호(2025. 1. 3.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4조 (가족수당) | 제24조(가족수당) ①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4명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40,000원, 기타 가족에 대해서는 월20,000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u>첫째 자녀 30,000원 둘째 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10,000원을 지급한다.</u> | 제24조(가족수당) ①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4명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40,000원, 기타 가족에 대해서는 월20,000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u>첫째 자녀 50,000원 둘째 자녀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20,000원을 지급한다.</u> |

○ 의안제2025-4호: 대관규정 일부개정 → 원안가결

- ▶ 개정근거: 공공시설 이용 접근성 개선 협약체결에 따른 사용료 감면 확대
- ▶ 주요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0조 (사용료 감면) | ③제1항에 의한 사용료 일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u>안산시 소재 초·중·고교의 문화예술 활동</u> | ③제1항에 의한 사용료 일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u>안산시 소재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대학교의 문화예술 활동</u> |
| 제10조의2 (사용료 감면 교육시설 기준) | | ① 감면교육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2항에 의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 보육법 제2조 3항에 의한다 3. 초·중·고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의한다. 4. 대학교는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교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관내에 소재한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 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

○ 의안제2025-5호: 2025년 제1회 자체 추가경정 예산편성 → 원안가결

- ▶ 편성근거: 2024년 결산 잉여금, 보조금 및 대행사업비 반납, 기부금 편성, 예산의 변경, 사업 계획의 변경, 신규사업의 발생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출자출연 기관 예산 편성 지침 및 안산문화재단 예산편성 관련 규정 근거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 2025년 경정액 | 2025년 기정액 | 증감액 | |
|----|------------|------------|---------|------|
| | | | 금액 | 증가율 |
| 수입 | 14,631,767 | 13,711,624 | 920,143 | 6.7% |
| 지출 | 14,631,767 | 13,711,624 | 920,143 | 6.7% |

▶ 주요내용

- (증액) 2024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반영: 180,740천원
 - √ 2024년 결산잉여금 271,875천원 중 1차 추경 편성: 180,740천원
 - √ 1차 추경편성 잉여금 잔액 예비비 편성: 91,135천원
- (증액) 2024년 기부금 미사용 잔액 이월 수입·지출 편성: 9,805천원
- (증액) 2025년 국비 보조금 편성: 213,800천원
 - √ 공연예술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 190,800천원/(재)예술경영지원센터
 - √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향연>: 23,000천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반납) 2024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4천원
- (반납) 2024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11,424천원
- (조정) 2025년 대행사업비 대행수수료 편성
 - √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위수탁 체결에 따른 대행수수료 2% 편성
 - √ 본예산 대행사업수익 중 수탁사업수익으로 예산조정 편성

○ 의안제2025-6호: (재)안산문화재단 임기만료 도래 비상임 임원 연임 및 충원 계획 → 원안가결

- ▶ 관련근거: (재)안산문화재단 비상임 선임 임원의 임기만료(2025. 3. 7.)가 도래하여 비상임 임원 연임 및 이사·감사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

▶ 임기만료 도래 비상임 임원 연임

- 임기만료: 2025. 3. 7.
- 연임 시 임기: 2025. 3. 8. ~ 2027. 3. 7.(2년)
- 대상인원: 10명

- 검토의견: 안산문화재단 이사의 책임과 의무, 재단에의 손실, 품위 손상 등의 제한되는 사실이 없고, 재단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임동 의서를 제출한 10인(고운기, 김영구, 김영애, 김영배, 민화식, 신영철, 조성제, 차현주, 한규석, 한태섭)에 대하여 연임하고자 합니다.

▶ 비상임 선임직 이사·감사 공개모집 계획(안)

- 총원인원: 3명(이사 2명, 감사 1명)
- 선임방법: 공개채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 채용개요
 - ✓ 임 기: 임명일로부터 2027년 3월 7일까지(1회 연임가능)
 - ✓ 임원보수: 무보수 ※예산범위내 회의수당 지급
 - ✓ 응시자격
 - 1) 문화예술 등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및 「안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직위 | 모집인원 | 주요 직무내용 |
|-----------------|------|---|
| 선임직 이사 (비상근) | 2명 |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 - 정관 등 규정 제·개정 및 폐지 - 기본재산의 관리·취득·처분·제한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조례·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의결 등 |
| 선임직 감사 (비상근) | 1명 | -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

✓ 채용일정

| 구분 | 일정 | 소요기간 | 비고 |
|---------------|------------------------------|------|----------------|
| 공 고 | 2025. 3. 11.(화) ~ 3. 21.(금) | 10일 | 공고일 제외 |
| 접수기간 | 2025. 3. 17.(월) ~ 3. 21.(금) | 5일 | 방문, 우편, E-mail |
| (1차)서류적격심사 | 2025. 3. 25.(화) 한 | - | |
| (2차)서류심사 | 2025. 3. 26.(수) ~ 4. 4.(금) 한 | - | 기간내 1일 |
| (3차)이사장의 선임결정 | 2025. 4. 9.(수) 한 | - | |
| 결과발표 | 2025. 4. 11.(금) | - | 홈페이지 개별통보 |
| 임용예정일 | 2025. 4. ~ 5. | - | 차기 이사회 |